

2010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(의안번호 제1182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1. 18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11. 20
다. 상정·의결일 자 : 2009. 12. 4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

-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

3. 주요골자

-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1년이상 금융기관에 예치
 - 기금지출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
 - 기금지출계획은 노인취미교실 강사료지원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 -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 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기금은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고성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,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

- 2010년도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등 539,463천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지출은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에 15,000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그에 대한 사유와 기금의 관리 방법, 향후 노인복지 증진사업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기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지. 농협이나 제1금융권이 아닌 지역농협에 예치할 수는 없는지 ?
- 답 :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고 있으며 지역농협 예치 문제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 부서와 협의하고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.
- 문 : 기금을 5억원을 조성해두고 2010년의 사업이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에 1천5백만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군 전체의 재정운영과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군이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?
- 답 : 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,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09. 12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